

● 병무청고시 제2022-1호

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

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5월 31일

병무청장

1. 관련근거

- 「병역법」 제21조의2 및 제36조
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0조의2, 제72조 및 제77조

2. '23년도 인력지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전문연구요원	산업기능요원	승선근무예비역
계	13,500	2,300	10,200	1,000
현역병 입영대상자	6,500	2,300	3,200	1,000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(보충역)	7,000	-	7,000	-

- ※ 전문연구요원의 보충역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
- ※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(7,000명) 초과 시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
- ※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

3. '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'23년도 인원배정

【전문연구요원】

○ '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

- '23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'23년 상반기 추가 선정
    - \* 선정 제외 대상 :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9조에 해당하는 업체
- 선정 기준
  -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(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명 이상)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서
    - \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(대기업은 제외) 및 「연구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(위탁 수행 포함)하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
    - \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설 연구기관, 「첨단의료복합단지

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
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(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을 확보 하여야 함)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
-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
- 추천권자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가점 부여

○ '23년도 인원배정

- '23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  - 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'22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,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-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(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,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방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)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: 1,000명(자연계대학원 600명, 과학기술원 400명)
  - \*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 「병역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인원을 의미함
- 중견기업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은 편입률,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차등 배정[대기업, 국(공)립 등·기초연구·정부출연·특정연구(과기원 박사과정 제외)·지역혁신·방위산업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. 다만, '23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인원을 훈령 제22조에 따라 인원배정 조정할 경우에는 국(공)립 등·기초연구·정부출연·특정연구(과기원 박사과정 제외)·지역혁신·방위산업 연구기관은 배정 가능]
-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인원배정 우대
-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,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(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)
- ※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'23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(단, '22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같음)해야 하며, 미신청 업체는 '23년 편입 불가

## 【산업기능요원】

### ○ '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

- '23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
  -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업체 선정 우대
    - \* 선정제외 대상 :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1조의 해당 업체
- 선정 기준
  - 공업 분야는 제조업 또는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법인 업체로서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, 제조·매출실적이 있으며, 제조·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
    - \* 다만,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와 취업협약(기업-학교-학생, 3자 협약)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
  - 에너지산업 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·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
  - 광업 분야는 광물(석탄은 제외)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, 선광·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
  -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
  - 수산업 분야는 어선(임차선박 포함)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
  -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
  -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

### ○ '23년도 인원배정

- '23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  - 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'22년도 병역지정업체[지방자치단체 시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, 이하 같음)·군·구 포함]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시·군·구,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    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당연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, '22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
    -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
- 기간산업체 배정
  -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·중소기업기술사관·유니테크·영마이스터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

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

\* '23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은 '23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(1·2순위 범위일 경우 → 재배정 시에도 1·2순위내 재배정)

-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배정

<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>

순위	1순위	2순위	3순위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성화고 졸업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(기업-학교-학생, 3자 협약)자</li> <li>- 일·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·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마이스터고·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</li> <li>○ 유니테크(Uni-Tech) 졸업자</li> <li>○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1순위 외)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</li> <li>○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,2순위 외</li> </ul>

\*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: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, 특허청의 발명·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,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,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

\* 일·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 참여자 :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학습병행, 도제식교육 참여자

\*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

\* 기술계 대안학교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(한국폴리텍다솜고)

\* 2004년 출생자('23년 19세)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(2004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'22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)은 업체별 1,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 인원 범위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

\* 일·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(이론교육)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('23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)

\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'23년 중 1학년 학습자, 2·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, 휴학·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

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

- \*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(대학학력자 제외)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

다만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(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)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(선취업·후진학)한 사람은 편입 가능

- \* 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

- 3순위 인원은 1·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

○ 각 분야별 별도 배정

각 분야별 별도 배정은 분야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순위·2순위 우선 배정(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 배정)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기간산업체에 배정

- 중점정책육성분야 별도 배정

- 중점정책육성분야는 최대 180명 배정, 업체당 최대 2명이내 추가 배정
- 기간산업체 중소기업 중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에 배정
- 신청인원이 18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'22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

- 방위산업체 분야 별도 배정

- 방위산업체는 업체당 최대 4명까지 배정

- 농어업 분야 별도 배정

- 후계농어업경영인은 217명 배정(후계농업경영인 198명, 후계어업경영인 19명)
- 농기계수리·운전요원 53명 배정
-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개인 평가점수 400점 이상 및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하고, 배정인원은 영농·영어정착지역(사업장) 또는 정착예정지역(사업장)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별로 배정[배정된 자는 영농·영어정착지역(사업장) 또는 정착예정지역(사업장) 주소지 관할 타 시·군·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불가]
- 후계농어업경영인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(20%), 후계농어업경영인의 평가점수(80%)를 합산하여 합산평가점수 순위별로 배정인원내에서 배정

- \* 순위별 동점 시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, 2순위 순서로 정함

개인별 평가기준 등

- ①학력및영농어교육훈련, ②영농어경력, ③영농어기반, ④가점사항,
- ⑤영농어사업계획, ⑥영농어정착의욕, ⑦지자체 종합점수 등

(1순위) ①, ②, ③, ④의 합계 순위

(2순위)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 순차별 점수 순위, 그 외 동점 시 별도 계획 수립

\*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 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 대체

\* 다만, 광역시·도별 배정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배정 신청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광역시·도별 최소 1명 이상 배정

· 농기계수리·운전요원은 시·군·구별 최대 1명 배정, 배정비율 및 편입율 등을 고려 배정

- 중견기업 분야 별도 배정

· 기간산업체 중견기업은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(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기업 또는,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)과 일자리 창출 기업('22.11월까지 보충역 1명이상 편입업체)에 한정하여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2% 이내, 업체당 최대 2명까지 배정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별도 배정

· 기간산업체 중소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최대 110명 배정
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이 해당하는 사람
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(부 또는 모)이 해당하는 사람

· 미배정자는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인원배정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 여부 결정

【승선근무예비역】

○ '23년도 인원배정

○ 대상업체

해운업체	수산업체
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·관리업체	총 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·관리업체

-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'22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

\* 업체별 필요인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10% 범위에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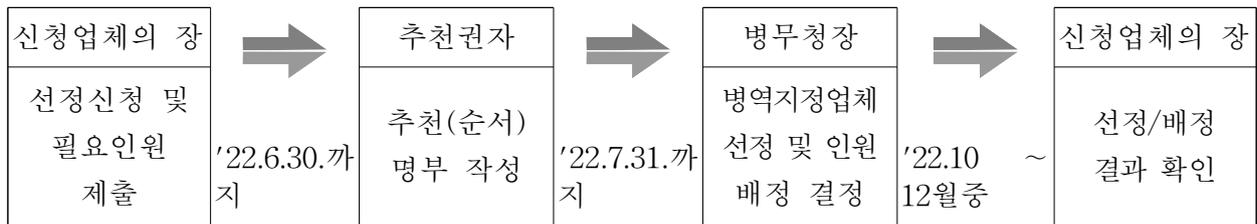
\*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으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

○ 배정기준

- '23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
- 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'22년도 해운·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, 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」 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  - \* 신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'22년도에 직무상 사망(실종)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외
  - \*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
  - \*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업체 인원배정 우대
  -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
  - \*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
  - 반납·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('23년 6월, 8월, 10월)
  - \* '22년 복무관리 종합평가 60점 이상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  - \* '23년 필요인원 배정업체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근무업체에 한함
- [다만, 직무상 사망(실종)자 발생, 위법·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인원배정 제한 대상 기간을 경과 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]

4.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



5.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

가. 전문연구요원(자연계 연구기관)

구분	분야별	접수기관	추천권자	
박사과정	자연계대학원	한국연구재단	교육부장관	
	과학기술원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석사학위 이상 기업부설 등	대학부설	한국연구재단	교육부장관	
	기업부설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국(공)립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			공공기관	
			공익법인	
			의료연구	
	기초연구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	정부출연			
	특정연구(과학기술원 제외)			
지역혁신	산업통상자원부	산업통상자원부장관		

구분	분 야 별	접수기관	추천권자
	방위산업	국방과학연구소	국방과학연구소장

나. 산업기능요원(산업체)

분야별	업 종	접수기관	추천권자
공 업	철강,기계,전기, 전자,화학,섬유, 신발,생활용품, 통신기기,정보처리, 시멘트·요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장관(중소기업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중견기업)
	의료의약	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,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화장품협회	보건복지부장관
	식품음료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의약품안전처장
	동물약품	한국동물약품협회	농림축산식품부장관
	농산물가공	한국식품산업협회	농림축산식품부장관
	수산물가공	시, 도	해양수산부장관
	임산물가공	산림청	산림청장
	게임S/W제작, 영상게임기제작, 애니메이션제작	한국콘텐츠진흥원	문화체육관광부장관
해운·수산	해 운	한국해운협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	해양수산부장관
	수 산	한국원양산업협회, 수협중앙회	해양수산부장관
광 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, 산업통상자원부(중견기업)	
에 너 지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, 산업통상자원부(중견기업)	
건 설	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해외건설협회	국토교통부장관	
방위산업체	한국방위산업진흥회	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	

※ 해운·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

다. 승선근무예비역(해운·수산업체)

분야별	접수기관	추천기관
해운	한국해운협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	해양수산부장관
수산	한국원양산업협회, 수협중앙회	

#### 6. 유의사항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'22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
-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
-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(사업장)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(다만,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업체에만 배정)

#### 7. 향후 추진일정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: '22년 6월(접수부처·기관 별도공지)
- 병역지정업체 선정/인원배정 실태조사 : '22년 8 ~ 10월
-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: '22년 11월
- 인원배정 결과 공지 : '22년 12월(병무청 누리집)